

## 2020년 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(재)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대전광역시 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0년 3월 16일

(재)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

### 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0년 대전광역시 『청년취업 희망카드』
- 신청·접수 : 2020년 4월부터(\* 예산 소진 시 까지)
  - \* 모집일정(예정) : <1차> 4월(1~10일), <2차> 6월(1~10일), <3차> 8월(1~10일)
  - \*\* 상기 일정은 지원목표 2,500명이 선정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최종 모집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할 수 있음
- 지원 대상 : 2,500명 / 만 18세 ~ 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\*
  - \* 세부 자격사항은 '2. 신청자격요건'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 규모 : 최대 300만원 / 월 50만원 × 6개월
- 지원 방법 : 청년취업 희망카드\*(포인트 차감방식)
  - \* 청년취업 희망카드(체크카드) 선 결제, 사후 정산(포인트 환급)
- 지원 내용 :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
  - 직접비(학원수강료, 교재구입비 등), 간접비(식비, 교통비 등)

- 접수 방법 : 홈페이지(youthpassdaejeon.kr) 온라인 접수
- 지원 절차 : 온라인 신청 → 서류 제출(방문제출) → 심사(자격요건심사) → 선정(약정체결 및 교육) → 지원개시(카드발급 및 포인트 배정) → 연계 교육프로그램 진행(종료 1개월 전까지 의무이행) → 지원종료 (6개월 기간 만료)

## 2. 신청 자격 요건

-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,

- (1) (나 이)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
- (2) (거 주)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
- (3) (학 력) 최종학교 졸업·자퇴 후 2년 경과한 자\* 또는 대학(교)·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(휴학생 포함)

\* 졸업 후 2년 경과 기준(예시) : 고등학교·대학(교)·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자 중 '18년 2월 졸업자까지 해당

☞ '18. 3월 ~ '20년 2월 졸업 등 2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희망카드 신청 불가

단, '18년도 2월 이후 제적(자퇴)한 경우 제적증명서 상 제적일자로 기간을 산정하여 제적 후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음(온라인 신청 마감 기준)

- (4) (소 득)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미만인 자\*

**\*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**

- ①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수 확인
- ②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

【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/ 기준 중위소득 150% 】

(단위:원,월)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직장	88,344	150,025	195,200	237,652	286,647	326,561	402,261	437,059
지역	63,778	147,928	203,127	254,909	308,952	349,099	426,790	462,265

※ 장기요양보험료 제외

**☞ 산정 방법**

1) 가구원수 산정방법 : **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**

- ①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(또는 모)인 경우 : 아버지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
-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1인 경우 : 본인 포함 피부양자수 합산

2)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: **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신청월 기준 전월분 고지금액 확인**

<예시> '20년 4월 신청자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

- ① 가수원수 산정방법 : '20년 3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확인
- ②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: '20년 3월 건강보험 고지금액 확인 (직장 및 지역 구분)

\* 단, 신청월 전월(3월 중) **건강보험 가입사실 변동이 있는 경우 '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** 확인 필요

(5) (미취업)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미취업자\*

\* (미취업)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**주 30시간 미만 근로자**는 신청가능(근로계약서 제출),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

\* **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** 또는 등록 후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(창업자도 취업으로 간주)

(6) (기타) 지원제외 대상 및 기타 자격요건 미달인 자

- 지원 제외 대상 : 다음의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(탈락사유)

- ① 고등학교·대학교·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
  - \*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자퇴 후 2년 이내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%이하인 자는 고용노동부 '청년구직활동지원금' 지원대상
- ②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학년이 아닌 재학생 및 휴학생
  - \*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졸업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,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지원 가능
  - \* 또한, 졸업학년 재학생 중 졸업학점이수자(졸업유예자 포함)는 고용노동부와 중복신청 불가
- ③ 신청일 기준 현재 주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 또는 창업자(사업자등록 등)
  - \* (취업의 기준)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
  - \* (창업의 기준)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
- ④ 실업급여 수급증인자,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
  - \* 단,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, 완료·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신청 가능
- ⑤ 2017, 2018, 2019년 희망카드 참여자 및 사업지원 중단자 (취업자, 부정수급자 포함)
  - \*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(참여)
- ⑥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 가구 청년

○ 신청 전 홈페이지(youthpassdaejeon.kr) 『사전 자가진단』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음

### 3.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

○ 구비 서류 : 서류 제출기간 내 방문제출\* 원칙

☞ (붙임) “구비서류 발급방법” 필독

심사항목		증빙 서류	부수	비고
구직활동 부합 여부		① 구직활동계획서	1	온라인 신청 시 작성 후 인쇄
거주지 및 거주기간		② 주민등록 초본	1	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(선택발급x)
		③ 주민등록 등본(전체포함)	1	
학력	졸업자	④-1 졸업증명서	1	최종학교 졸업 후 2년 경과
	재학생	④-2 재학증명서 1부	1	졸업학년 증빙
	* 최종학교 자퇴 시	④-3 자퇴확인서(제적확인서)	1	
미취업 여부	필수	⑤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(고용보험 / 상용조회)	1	
	(해당자만 추가 제출)	*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	1	
가구 중위 소득	가구원수	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(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)	1	
	건강보험료	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)	1	
	자격확인	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(신청인 본인 자격득실확인서)	1	
	(해당자만 추가 제출)	*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및 의료급여 증명서 (또는 의료급여증) 사본	1	
		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	1	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, 서명 후 제출

○ 제출방법 : 제출방법 및 제출장소 등 세부 사항은 신청월 1일 ‘청년취업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’ 에 별도 안내

○ 제출기간 : 온라인 신청 마감 후 서류 제출기간 중 제출

\* 제출시간 : 평일 근무일 기준 10:00 ~ 17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제외

[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]

- (1)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,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취소됨 \* 온라인 미신청자는 서류 접수 불가함
- (2) 서류는 온라인 신청 기간 중 발급(기관 및 인터넷)분에 한해 유효함  
\*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
- (3)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,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  
\* 사업담당자의 보완 요청 시 1주일 이내 제출
- (4) 서류 미비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심사가 불가하여 자동 신청 취소(추후 재신청 가능)
- (5) 서류는 방문제출 원칙이며 팩스, 우편, 퀵, 택배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
\*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출방법 등은 "홈페이지"에 별도 공지
- (6)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
\* 대리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서류 분실, 심사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 시 본인 감수

### 4.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 방법 :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(youthpassdaejeon.kr) 온라인 신청

○ 신청 기간 : 4월부터 격월 모집 (짝수달 1일 ~ 10일까지)

【 청년취업희망카드 주요 일정 (참고) 】

구분	신청기간	서류제출기간	심사.선정	지원기간
4월	4.1.~4.10.	4.13.~4.17.	4.20.~5.29.	'20.6.1.~'20.11.30.
6월	6.1.~6.10.	6.11.~6.16.	6.17.~7.31.	'20.8.1.~'21.1.31.
8월	8.1.~8.10.	8.11.~8.14.	8.17.~9.29.	'20.10.1.~'21.3.31.

\*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, 해당월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방문접수자에 대해 심사

## ○ 선정 절차

- ① 희망카드 홈페이지(youthpassdaejeon.kr) 접속
- ⇒ ② 신청자격 확인(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)
- ⇒ ③ 회원가입 【개인정보 입력, 약관동의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등)】
- ⇒ ④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(작수달 1일 ~ 10일)
- ⇒ ⑤ 서류 방문제출 (제출기간 및 장소 등은 희망카드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 참조)
- ⇒ ⑥ 심사 ⇒ ⑦ 선정(이메일 및 홈페이지 확인)
- ⇒ ⑧ 사업설명회(약정체결 및 교육) ⇒ 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

## 5. 선정기준

### ○ 선정방법 : 정량평가 + 정성평가

- (정량평가) 신청 자격기준\*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평가

\* 나이(주민등록번호 기준), 거주지 및 거주기간, 미취업 여부, 가구기준 중위 소득, 타사업 중복 참여 여부, 지원 제외 해당 여부, 기타 서류 미비 등(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)

\*\* 단, 최종 회차(또는 추가모집) 모집 시,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심사기준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

⇒ 우선순위 심사기준 '가구소득(40점), 거주기간(30점), 가구원수(15점), 미취업기간(15점)'

- (정성평가)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

- (최종선정)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부 결정으로 최종선정

## 6. 최종선정 및 발표

### ○ 심사기간 :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완료자에 대해 심사 및 선정

\* 단, 신청량에 따라 심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일정 조정 시 희망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

- 최종선정 : 신청월 기준 다음달 20일 이후 발표
- 결과안내 : 개인별 이메일 확인 또는 희망카드 홈페이지 확인
  - \* 청년취업희망카드 홈페이지 주소 : youthpassdaejeon.kr
  - \* 개인별 이메일은 사업 신청 시 본인이 작성한 이메일 통보
- 최종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: 사업설명회(약정체결 및 교육)
  - \* 교육일정은 개별 통보하며 상세 내용은 희망카드 홈페이지 '공지사항' 필독
  - \* 필수 이행과정(약정체결 및 교육) 미 이행 시 최종 탈락(반려) 됨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,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반려(탈락·취소)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기간 중 취업·창업하거나 대전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미신고시 지원이 중단(종료)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 지원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, 서비스 제한,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취업 희망카드 선정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(약정체결 및 교육)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선정에서 반려되며 추후 재신청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.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, 허위서류 제출(심사서류 포함), 부정사용, 취·창업·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 위반 사유로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,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.
- 기타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희망카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 ☎ 042-719-8325, 8326, 8327, 8328)

**[붙임1] 구비서류 발급방법**

**[붙임2]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항목(예시)**

필수 서류	발급 방법
① 구직활동계획서	· 희망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인쇄
② 주민등록 초본	·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등
③ 주민등록 등본	☞ 온라인 신청 기간 (1일~10일)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④ 졸업증명서, 제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	· 해당대학 행정실,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등 ☞ 온라인 신청 기간 (1일~10일)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⑤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(고용보험 / 상용조회)	·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 이용 ① 개인/일반근로자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 ② 증명원 신청/발급 ③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선택[보험구분 : 고용 / 조회구분 : 상용] 후 조회 * 고용·산재보험 가입 <b>이력이 없는 경우</b> 에도 반드시 인쇄 후 제출 * <b>고용보험 상실일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반드시 추가 제출</b> (주30시간 미만의 근로자, 아르바이트 등) ☞ 온라인 신청일(1일~10일)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, 서류의 종류가 다른 경우도 인정되지 않음
⑥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	· <b>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</b> 이용(T.1577-1000) ① 개인 로그인(본인 또는 가입자 공인인증서 필요) ② 방문자별 맞춤메뉴(개인→민원신청) ③ 자주 찾는 민원에서 발급
⑦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- 자격확인서 (모두 선택) - 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료 체크 / 2020년 전체분 발급)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전체 발급)
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*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므로, 희망카드 신청자가 주보험자가 아닌 경우, 건강보험 가입자가 발급 요청하여야 함 ☞ 온라인 신청일(1일~10일)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, 신청월 기준 2020년도 전체 납부내역이 나와야 함
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·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발급 (서명 후 제출)
⑩ 기타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	

① 지원항목 /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

\* 항목별 지원가능 항목(예시)

구분	지원 항목	내 용
직 접 비	교 육 비	· 취·창업 진로 및 창업교육비, 자격증 취득 학원비 등 (단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용자 등 제외) · 이력서 작성법, 면접요령 등 컨설팅 비용
	면 접 비	· 면접 및 시험 응시 등을 위한 복장대여, 이·미용비, 사진촬영비, 숙박비(시외지역 면접·취업시험 시) 등 · 기타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
	자격증 접수비	·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접수비, 어학시험 응시료 등
	교재·도서구입비	· 취업 준비 및 구직에 필요한 교재 및 도서구입비
간 접 비	교 통 비	· 면접 및 시험 등 취업 활동을 위한 시외 교통비(기차, 버스 등) · 시내 교통비(시내버스, 지하철 등 후불 교통비) ☞ 개인적 사유(연령, 신용불량 등)로 교통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지원 불가
	식 비	· 월 20만원 한도 지원

② 지원 불가 항목

\* 항목별 지원불가 항목(예시)

구 분	지원 불가 항목
교 육 비	· 진학관련 입시학원
면 접 비	· 5성급 이상 특급호텔 숙박, 자격증 시험을 위한 숙박, 정장 구매 등
교재·도서구입비	· 잡지류, 만화, 성인물, 음반, 사무용품 등
교 통 비	· 주유비, 택시비, 고속도로 통행료, 선박 및 항공요금 등
식 비	· 음주비, 물품구입비, 등
기 타	· 당구장, 볼링장 등 레저업소 및 사치향락업소 · 자산성 비품(PC, 태블릿PC, 핸드폰, 안경 등), 사무용품, 의류 및 잡화 구입비, 기타 생활용품 구매 등 · 대학등록금(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등록비 포함) · 공과금, 수입인자, 여권발급 비용, 일반상품권 등 각종 수수료 · 병원진료비, 의약품 구입비 등

☞ (지원금 사용 유의사항) 지원불가 항목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
⇒ 자세한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은 '청년취업 희망카드 이용자 매뉴얼' 필독